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7. 2. 14.

나. 발 의 자: 박희순·김종두·표주숙·변상원·이홍희·강철우·최광열·
형남현·이성복·권재경·김향란 의원(11명)

다. 회부일자: 2017. 2. 16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7. 2. 27.

2. 개정이유

- 거창군의회회 자치입법기능 활성화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장 · 부의장의 임기 및 군정질문에 대한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의장과 부의장 임기 구체화(안 제9조제2항, 제3항)

○ 현행: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

변경: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

※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이 늦어지더라도 전반기 의장단 임기는 6월 30일로 종료하고 후반기 의장단 임기 시작일은 7월 1일이 되도록 변경함.

-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
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선출한 날 전일까지 재임.
- 나.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에 대한 절차규정 신설(안 제65조의2)
 -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절차를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심사 절차와 동일
- 다.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절차규정 신설(안 제66조의2)
 -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절차를 회의규칙으로 명문화
 - 본 질문과 보충질문 방법 및 질문시간 구체화하여 혼란 방지

현행(관례상)	변경(회의규칙 명시)	비 고
본 질문 20분	본 질문 20분	일괄질문
보충질문 10분 (답변시간 제외)	보충질문 20분 (답변시간 포함)	일문일답
추가 보충시간 없음	추가 보충시간 10분 (의장이 허가하는 경우)	

- 군정질문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 명시
 - 의원은 질문요지서 작성하여 의장 제출
⇒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부
 - 군수는 군정질문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개정규칙안은 거창군의회의 자치입법기능 활성화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·부의장의 임기 및 군정질문에 대한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해당 없음
7. 수정안 요지: 해당 없음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 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 없음